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11 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도읍・조지연・구자근

권영세 · 김형동 · 백종헌

장동혁 • 인요한 • 신동욱

정점식 · 유상범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,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등을 규정하고 있음.

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 로 지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·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,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취소에 관한 사

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6조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, 시설· 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
- 4.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
-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, 인증업무의 범위·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권리자 등의 인증) ① (생	제56조(권리자 등의 인증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
	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,
	<u>시설·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</u>
	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
	신청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
	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	<u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</u>
	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
	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
	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
	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
	소하여야 한다.
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
	<u>은 경우</u>
	2.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
	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	3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
	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
	한 경우

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

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

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 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(생 략)

4.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

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, 인증업무의 범위·수 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